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1 선고 2018가단5036598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고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변론 종결2019. 1. 14.

판결 선고2019. 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원고와 C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8. 1. D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2016. 8. 1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인 원고 등, 하수급인 F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7. 4. 15.까지, 공사대금 3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현장대리인)

- ① F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고 등에게 통지한다.
- ② 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F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 ① 원고 등 또는 F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원고 등 또는 F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부도.파산 등 F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 3. 원고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 4.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 5. 원고 등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때

나. F은 2016. 8. 16.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등, 보증금액 3억 9,050만 원, 보증기간 2016. 8. 16.부터 2017. 4.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피고(이하 '조합'이라 합니다)는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2. 채무자가 이미 이행한 계약 중 계약내용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다만, 기성검사 시 이미 발생한 하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있기로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요청한 자료와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7조(보증금의 지급기한)

①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다. 원고는 2017. 3. 7. F에 '공사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17. 3. 1.부터 현재까지 현장대리인이 공석 중으로 공사 지연 및 현장관리 부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당 현장의 전체 공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 2017. 3. 10.까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지연된 공정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만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에서는 2016. 12.분 기성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거래처에서 12월분 미불에 대하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니 조속히 처리하여 원활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 3. 10.까지 조치 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연 공정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정 만회 대책 및 예정공정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상태이므로 2017. 3.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공사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 2017. 3. 7.자 내용증명우편상의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7. 3. 27. F에 내용증명우편으로 '2017. 2. 28.까지의 기성공사수량을 타절정산수량으로 산출하고, 미불금에 대하여 F에서 제출한 미불금 지불계획서에 의거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조건으로 2017. 3.

10.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이 사건 해지통지는 그 무렵 F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6. 피고에게, F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F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직영 내지 다른 하도급업체를 선정, 수행하여 9,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0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청구권은 원고가 F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 4호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데, 발주자인 D, 원사업자인 원고 등 및 수급사업자인 F은 D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F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F의 은행 계좌를 등록한 후 D에서 F의 위 계좌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F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보증금 9,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지급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위 9,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요건 미충족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 및 C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7조에 따라 원고와 C이 공동으로 F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계약해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 부존재 등 ①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는 2016. 12. 27. 신설된 조항으로서, 2016. 8. 16.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은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단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데, 원고는 F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D, 원사업자인 원고 및 수급사업자인 F 사이에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구 하도급법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칙 <제27702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3 제3호 가목 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판단

가.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

1) F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중단된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G 주식회사에 맡기면서 9,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계약해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공동수급표준협정에 따라 원고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기로 하고,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갑 제2호증의3 협정서 제3조)고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등 참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709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는 원고가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에 따른 대표자로서 한 행위이거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으로서 한 행위로서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5조 제1항은 '원고 등 또는 F은 위 항에서 정한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3. 7. F에 '2017. 3. 10.까지 지연 공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정 만회 대책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위 조치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자 2017. 3. 27. F에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여부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는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위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6. 8. 16. 체결되어 2017. 3.경 해지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존재 여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 8항).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위와 같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제8항,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한편,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반드시 위 3자간에 동시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12,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과 D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갑 제2호증의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8조의2)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6. 9.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인 D이 하수급인인 F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하고, 이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H는 2016. 9. 30. D에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이 사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항목은 적합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사업자인 원고와 수급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고, 원고가 위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인 D에 제출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D이 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위 직불합의는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F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원고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거나, 위 직불합의서에 기재된 F의 은행 계좌와 D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F의 은행 계좌가 다르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8항,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F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보증금 지급 결정 철회 가부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의 원고 등의 실제손해액인 9,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조국인